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 변경사항 안내

-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 의무화(권고^{기존}→의무^{개정})
- **수행기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
- **사전검토 절차**



④ 사전검토 의견 반영 및 보완 결과 확인

협의기관(부서)에서 확인

승인기관	협의기관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 지방행정기관	지자체 협의기관(부서)

⑤ 사전검토 완료(협의 진행)

□ 관련 문의처

<재해영향평가 법령, 지침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담당자(☎044-205-5169) 또는 국민신문고 활용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 사전검토 의견 문의

안재찬 연구관 (☎052-928-8150), 여창건 연구사 (☎052-928-8190),
곽창재 연구사 (☎052-928-8191), 황주하 연구사 (☎052-928-8192),
장광진 연구사 (☎052-928-8194)

- 사전검토 신청 문의

김민조 연구원(☎052-928-8193)

※ 사전검토 의뢰 공문 신청 및 회신 관련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ndmi.go.kr) 참고,
사전검토 관련 문의사항은 ‘붙임 2. 사전검토 제도 관련 Q&A’를 사전에 확인 후
문의 부탁드립니다.

□ 기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보고서 작성 및 보완 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보고서 작성
가이드북”(2023.10.17. 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전검토 진행 여부 확인 방법

- 조회대상: 관계행정기관에서 발송한 사전검토 의뢰(요청) 공문이 연구원 (방재연구실)에 신청된 건 ※ 이메일 신청건 미해당
- 확인방법: 연구원 홈페이지(www.ndmi.go.kr) 접속 → 우측 팝업존(재해 영향평가 사전검토) 클릭 → 해당 사업 검색 및 조회

① 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및 우측 팝업존 클릭



② 사업 검색 및 조회 화면



Q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 협의가 아닌 민간 사업(지자체)도 모두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A1.

최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4항의 개정으로 사전검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24. 7.31.부터**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중앙·지자체 모두 포함)은 협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권고)	개정(의무)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u>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u>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u>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u>

Q2.

사업 종류(행정계획/개발사업) 또는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원으로 사전검토를 요청하면 되나요?

A2.

재해영향성검토(행정), 재해영향평가(개발), 소규모재해영향평가(개발) 모두 연구원에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전검토 안내사항 및 업무 절차를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과업)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가요?

A3.

연구원은 협의(또는 재협의) 대상을 판단하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리 해석에 관련된 문의는 협의기관(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중앙), 재해영향평가 담당 부서(지자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 후 답변을 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4.

승인기관(부서)과 협의기관(부서)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저희 사업(과업)의 승인 기관과 협의기관은 어디인가요?

A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기관(부서)은 사업의 인·허가 담당을, 협의기관(부서)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담당하는 기관(부서)을 지칭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3. 동일 시·도 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도지사

Q5.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검토 의견 회신일까지의 대략적인 소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A5.

사전검토 의견 회신 기한은 '사전검토 요청 공문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 (토요일, 공휴일 제외*)입니다.

※ 사전검토 요청 공문 시행 전, 이메일을 통한 사전검토 신청서 송부 또는 보고서 우편 송부일에 소요되는 시간은 법적 회신 기한인 14일 내에 포함되지 않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처리기간의 계산)에 따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www.ndmi.go.kr)에서 사전검토 공문신청 및 검토의견 회신 진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메인 → 오른쪽 중앙 팝업존 내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배너 클릭 (사전검토 안내사항 공지문 붙임 참고)

Q6. 사전검토를 요청하기 전, 사업 설명을 위해 연구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A6. 현재 사전검토 업무는 서면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을 위한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Q7. 변경된 사전검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7. '24. 7.31.부터는 사전검토 의뢰 공문을 보내기 전에 협의서 인쇄본 1부를 우편으로 보낸 후,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pdia2019@korea.kr)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는 연구원에서 검토 후 회신 메일을 드리며, 대행자는 회신 내용을 확인 후에 '사전검토 의뢰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Q8. 사전검토 의뢰 공문을 발송하는 주체(승인부서/사업시행부서)는 어디인가요?

A8.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에 따라 승인기관(부서)에서 사전검토 의뢰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Q9. 사전검토 완료 후,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보완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9.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사전검토 의무화 시행일('24. 7.31.) 이후 신청한 사업부터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 보완확인 업무는 협의기관(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중앙), 재해영향평가 담당부서(지자체))에 요청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Q10.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 연구원으로 보내야 하는 서류(자료)가 있나요?

심의의견과 조치결과(계획)가 포함된 **USB(보고서 장별 전체 내용, 위원별 심의의견, 조치결과(계획)수록)**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해영향평가팀 앞으로 우편 발송

A10. 해주시면 됩니다.

※ USB 송부 시 별도의 공문은 필요하지 않으며, USB에 사업명 등 간단한 내용을 태그 부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관련 서식 및 자료

- (사전검토 안내) 연구원 소식 → 공지사항 → (검색어) 「사전검토 안내」
※ ‘사전검토 안내서’, ‘사전검토 신청서 양식’ 파일 첨부
- (가이드북) 연구원 소식 → 공지사항 → (검색어) 「보고서 작성 가이드북」
(2023.10.17. 등록)

The screenshot shows the NIEHS website interfac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연구원소개', '연구원소식', '연구성과', and '정보공개'. The page title is '공지사항' (Notice). On the left, there is a sidebar menu with '연구원소식' selected, containing sub-items like '공지사항', '임상광고', '채용광고', '보도자료', '예산자료', '중보자료', '국제업무', '심수상황', '채점프로그램',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and '간행물'.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list of 6 notices. The table below is a reproduction of the data shown in the screenshot.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 안내(2022.1.4. 시행)」	방재기술평가센터	2022-02-17	1903
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 안내(2021.3.3. 시행)」	방재연구실	2021-03-03	6400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 안내(2020.6.1. 시행)」	방재연구실	2020-05-29	2331
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보고서 작성 가이드북」	방재연구실	2020-05-14	2863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 안내	방재연구실	2019-01-21	9070
1	[안철홍교]재해영향평가 협의지역 분석시스템 구축용역 공고	관리자	2008-05-17	1915